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0. 18 (화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10. 25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10. 25(화) 제12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10. 25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신영선 자치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 받은 개별주택가격평가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과 관련한 전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
-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5명에서 10명이 증원된 585명으로 조정(안 제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574명(증 10명)
 -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1명(변동없음)
- 증원사유
 - 개별주택가격평가(과표) 업무 수행 : 3명
 -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: 7명

직 렬	직 급					비고
	계	6급	7급	8급	9급	
합 계	10	1	2	5	2	
세 무 직	3		1	2		
사회복지직	7	1	1	3	2	

- 부칙의 한시정원 삭제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가.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
- 나. 개별주택가격평가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과 관련한 전담 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을 증원하여 현정원 575명에서 10명이 증원된 585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
- 다.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